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

골프장 캐디 특징



골프장 캐디 정의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종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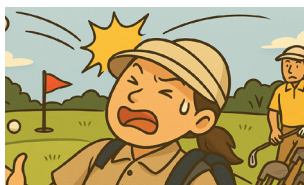


주요 사고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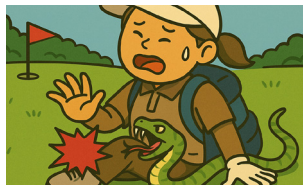
골프장 캐디는 골프카트 운전, 골프백 수령·운반, 플레이어와 경기 진행(조언 등)하며 경기 종료 후, 카트 청소·충전과 파손된 코스 배토작업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.



부딪힘



맞음



물림·쏘임



온열질환



업무 특성

- 1 클럽 선택 조언, 거리 및 코스 안내 등 플레이어의 경기 보조
- 2 컨베이어 등으로 운반된 플레이어의 골프백 수령, 상·하차 및 운반
- 3 골프카트 청소, 충전 및 주차, 플레이어(골프백 포함)와 코스 간 이동
- 4 장시간 야외 근무로 폭염 등 환경적 요인에 직접 노출
- 5 골프경기 중 주변 상황을 살펴 안전사고(타구에 맞음, 골프카트 충돌 등) 예방, 플레이어 주의 환기



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상차 및 하차

작업 내용

골프백 대기장에서 플레이어의 골프백 등 중량물과 라운딩에 필요한 골프용품 등을 골프카트에 상·하차 * 사용설비: 컨베이어, 핸드카트 등

유해 위험 요인

- 컨베이어 등 회전체 끼임, 감전사고
- 골프백 대기장 바닥에서 넘어짐, 미끄러짐
- 경사로에서 골프카트 브레이크 미체결로 구조물과 끼임
- 중량물 운반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



코스 이동

작업 내용

플레이어의 샷 위치에 따라 페어웨이, 러프, 벙커 등 다양한 지형을 도보 또는 골프카트로 그린이나 홀 등 코스 간 이동 * 사용설비/도구: 골프카트, 거리측정기 등

유해 위험요인

- 골프카트 운전 시 부딪힘·충돌, 전복
- 그린이나 홀 등 코스 이동 시 넘어짐
- 타구에 맞거나 뱀, 벌 등 해충에 물림
- 열사병, 열탈진, 열경련 등 온열질환



주요 재해사례



넘어짐



내리막 커브 길을 내려오던
골프카트에서 넘어짐

예방 대책



- 골프카트 탑승 시 승차 정원 초과 금지
- 내리막 도로 과속 방지
- 운전 시 휴대폰 사용 금지



맞음



골프 플레이 중 날아오는 타구에 맞음

예방 대책



- 스윙 구역과 안전거리 유지
- 타구 방향 위치 확인 후 이동
- 플레이어, 캐디 등 상호 간 신호 및 의사소통 준수
- *골프카트 도로 우회, 티박스 위치 조정 등 코스 재설계 검토



빠짐



해저드(물 웅덩이)에 빠짐

예방 대책



- 출입금지·몸균형 상실 경고 등의 안전보건표지 설치
-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구조용 기구(구명환 등) 설치
- 작업안전수칙 게시·교육



사랑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🚩 골프장 캐디

- ✓ 골프카트 운전은 지정된 골프장 캐디만 운전한다.(플레이어 운전 금지)
- ✓ 승차석 외 탑승을 금하고,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다.
만약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 탑승자는 골프카트 이동 중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는다.
- ✓ 골프카트 출발 시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고, 경사도가 심한 곳에서는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지 않는 등 저속 운행한다.
- ✓ 골프장 내 지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한다.x
- ✓ 선행하는 골프카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, 지정된 주행로에서만 주행한다.
- ✓ 골프장 코스 이동 시 미끄럼방지 신발을 착용한다.

🚩 골프사업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

- ✓ 온·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✓ 캐디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✓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

1 물 2 바람·그늘 3 휴식 4 보냉장구 5 응급조치



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3항